

# -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- 시험 일시 · 지역 및 유의사항 등 안내

## I 시험 일시 및 지역

가. 대 상 : 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시험 합격자 및  
제1차시험 면제자 중 응시원서를 제출 한 자

나. 시험일시 : 2024. 10. 12.(토) 10:00 ~ 11:40 (100분) / 4개 과목(과목당 25문항)

※ 외무영사직 : 10:00 ~ 11:15(75분, 3개 과목, 과목당 25문항) / 시험종료 후 대기(11:40 퇴실)

다. 응시지역 :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

※ 세부 시험장 배정내역은 2024. 10. 4.(금),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

※ 시험 응시는 원서접수 시 본인이 선택한 지역에서만 응시 가능하며, 응시지역 변경 불가

## II 응시자 유의사항

가. 응시자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지역의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,  
타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합니다.

나. 시험장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

- 응시표 출력방법 : 사이버국가고시센터 - 마이페이지 - 원서접수 내역 - 응시표 출력

- 신분증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
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

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  
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.

다. 장애인 등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 제공받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 
적용됩니다. 신규 또는 추가·변경 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아래(III. 장애인 등 편의제공  
안내)를 참고하여 '24. 9. 2.(월)까지 편의제공 담당자 이메일(ohujung@korea.kr)로  
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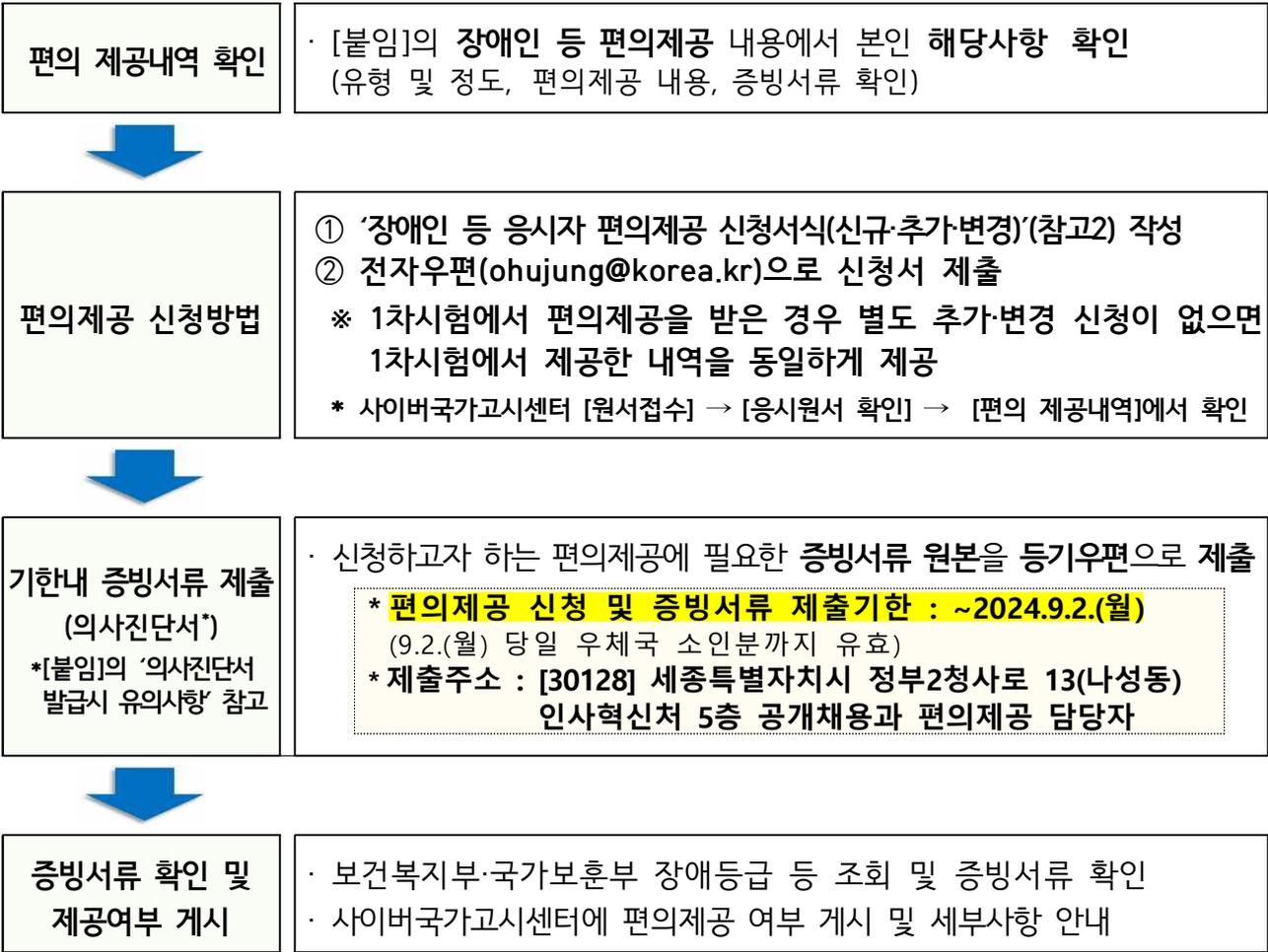
# Ⅲ 장애인 등 편의 제공 안내

## □ 편의제공 대상

-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1차시험 합격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
 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으로서,
  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하여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기타 특수·중복장애, 일시적 장애, 임신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람

## □ 신청절차

※ 편의제공은 제1차시험에서 제공받은 응시자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신규 또는 추가·변경 신청을 희망하실 경우에만 아래의 절차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□ 신청시 유의사항

- [붙임]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필요 증빙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, 편의제공 신청(첨부2) 및 증빙서류(필요시)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 - ※ 상이등급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참고하여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서류 확인(의사진단서상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)
  - ※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, 미제출시 신청사항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
  - ※ 1차시험에서 편의제공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기존 제공내역을 동일하게 제공하며, 면접시험 편의제공은 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·접수합니다.
- 종합장애는 주·부장애 유형 및 정도를 기준으로 제공여부를 판단합니다.
  - ※ 종합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한 응시자(하지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/상지 지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)가 시간연장·대필을 신청한 경우 세부장애유형 및 정도가 편의제공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간연장 및 대필은 원칙적으로 불가
  - ※ 본인의 세부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모르는 경우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S/W탑재 PC, 점자문제지, 대필 등 편의제공을 신청한 경우
  - ① 본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  - ※ 편의제공 항목 중 '시험시간 연장'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에서만 제공
-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. ([붙임] “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”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)
  - ※ 다만, 임신부의 경우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  - ※ 해당 지역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·약국 찾기]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.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)
- 증빙서류(진단서·소견서) 제출 대상 응시자 중 기존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동일한 편의제공을 받았으며, 제출한 증빙서류가 **2022. 5. 19. 이후 발급된 진단서**에 해당하면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.
-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 보완기간이 없으며, 문의사항은 편의제공 신청기간 내(8.28.~9.2.)에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(044-201-8247~8251)로 문의바랍니다.

**1 지체장애인**

**1 상지지체 -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1~3급)**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○ 답안지 대필</li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없음

**2 상지지체 -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기존 4~6급)**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없음

**3 하지지체 (기존 1~6급)**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</li> <li>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없음

## 2 뇌병변장애인

###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(기존 1~3급)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○ 답안지 대필</li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</li> <li>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없음

###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기존 4~6급)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○ 휠체어 전용책상 (휠체어 사용자)</li> <li>○ 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없음

※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뇌병변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대필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, 예외적으로 손떨림, 마비, 뒤틀림 등으로 인한 손, 목의 운동장애로 답안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의사진단서(소견서는 불인정) 검토 후 제공여부 결정

### 3 시각장애인

#### 1 필기시험시간 1.7배 연장이 가능한 경우

기존 시각장애 1~2급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시험시간 1.7배 연장, 음성지원 S/W 탑재 컴퓨터, 점자문제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를 통해 해당 요건을 조회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. 단,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거나, 2019.7.1. 이후 장애판정을 받아 조회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(최대 교정시력 기준, 이하 동일)이 0.04이하인 사람 (기준 1~2급)
- ② 시각장애인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'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' 받은 사람 (기준 3~4급 각 2호 중 해당하는 경우)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험시간 1.7배 연장</li> <li>○ 음성지원s/w 탑재 컴퓨터</li> <li>○ 점자문제지</li> <li>○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</li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축소문제지 (확대독서기 사용자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82%(10pt, A4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<p><b>【시험시간 1.7배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 신청 시】</b></p> <p>①에 해당하는 응시자: 양눈의 시력이 기재된 의사 진단서 제출(소견서는 불인정)          ※ 2019.7.1. 이전에 시각장애 1~2급 판정을 받은 경우 제출 생략(별도 연락 시 제출)</p> <p>②에 해당하는 응시자: 양눈의 시력·시야 및 지원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는 불인정)</p>

- ※ 축소문제지는 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가능
- ※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('17.3.28.시행)을 반영하여 제공
- 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
## 2

### 필기시험시간 1.5배 연장이 가능한 경우

-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(기존 3급 1,2호)
- ②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(기존 4급 2호)
- ③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 (기존 4~5급 각 1호)
- ④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이하로 감소한 사람 (기존 5급 2호)
- 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중 시험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(기존 6급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 중 해당하는 경우)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험시간 1.5배 연장</li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없음</p> <p>* 다만, ⑤에 해당하는 응시자가 시험시간 1.5배 연장을 신청한 경우 양눈의 시력 및 시간연장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(소견서는 불인정)</p>

## 3

### 공통 제공사항이 가능한 경우: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확대문제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118% (14pt, A3규격), 150% (18pt, A2규격)</li> </ul> </li> <li>○ 확대답안지 (2종 중 택1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A3 표기형, A3 기입형</li> </ul> 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/ul>	없음

※ ①~④의 경우에도 장애 유형(장애정도 등)의 조회 및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
## 4

### 청각장애인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</li> <li>○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</li> <li>○ 수화통역사 배치</li> </ul>	없음

## 5 기타 편의제공이 필요한 경우

### 1 기타 장애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제공 내용 결정</li> </ul>	<p>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</p>

※ 시험시간 연장 대상이 되는 장애유형·정도 외 중복 및 기타 장애유형은 **원칙적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받을 수 없으나**, 예외적으로 시각중복장애 { (예시)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, 편안 약시와 시야 20도 이내 } 나 안과질환 { (예시)망막이상, 녹내장 } 등으로 답안지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**의사진단서(소견서 불인정) 검토 후 인정**  
 → 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

### 2 임신부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높낮이 조절 책상</li> <li>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</li> <li>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</li> </ul>	<p>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          (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, 임신사실 확인서도 인정)</p>

### 3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</li> <li>별도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</li> </ul>	<p>의사진단서</p>

### 4 일시적 신체장애 / 특수 및 중복장애

제공내용	증빙서류 제출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상·정도를 검토하여 편의제공 내용 결정</li> </ul>	<p>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</p>

# 참고 1

## (해당 응시자)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

□ 발급기관 : 「의료법」제3조에 의한 **종합병원 (또는 상급종합병원)**

- ※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의 [병원·약국찾기]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**전문직의 면허번호와 서명(날인)**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
- ※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·통원확인서, 진료확인서, (통원)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
- ※ **임신부**의 경우에는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**의사소견서** 또는 **임신사실확인서**로 증빙 가능

□ 발급일자 : 해당 시험 **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(원본)**

구 분	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
응시원서 접수마감일	2024년 5월 20일
진단서 발급일	2022년 5월 19일 이후

□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

- ① (장애)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\*시각장애의 경우, 시력 또는/및 시야각 명기
- ② (장애로 인한)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
-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

-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

예시)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

⇒ **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컴퓨터, 점자문제지**

- 원서접수 시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

- 임신부 응시자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신청할 편의제공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

### <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>

장애유형 및 정도	예 시	* ①~③ 반드시 기재
시각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시력/시야: 좋은 눈 0.07,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, 음성지원 컴퓨터, 점자문제지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시력: 나쁜 눈 0.02이하, 좋은 눈 교정시력 0.3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뇌병변장애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- 증상: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
기 타		① 장애유형 및 정도: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- 증상: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: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: 시험시간 연장 (단,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)

※ 시험시간 연장,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**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 불인정)**

## 참고 2

##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신청서식

시 험 명	2024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	
신청구분 ※해당항목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추가신청	
인적사항	성명 :	응시번호 :
	생년월일 :	연락처 :
장애유형 및 정도	*(예시) 하지지체장애 중증 / 뇌병변장애 경증 / 시각장애 중증(나쁜눈의시력이 0.02 이하) 등	
편의제공 신청항목 (추가·변경 항목)		
제공 필요성 (추가·변경 필요성)		

※ '24.9.2.까지 [ohujung@korea.kr](mailto:ohujung@korea.kr)로 신청서 제출

### 참고3

##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(요약)

장애유형 및 정도		편의제공 내용	증빙서류(각부)	비고	
지체 장애	상지	공통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
뇌병변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휠체어 전용책상(휠체어 사용자)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 · [선택형 시험] 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
시각 장애	공통		· 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 [논문형 시험] 답안작성용 컴퓨터	-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1~2급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-	기존 3급 2호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	기존 3급 1,2호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7배, 논문형 1.5배) · 음성지원컴퓨터 · 점자문제지, 점자답안지(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) · 축소문제지(확대독서기 사용자)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 *	-
		· 좋은 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-	- *	기존 4.5급 1호
		· 두 눈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% 이하로 감소한 사람	· 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, 논문형 1.2배)	- *	기존 5급 2호
		· 나쁜 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,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-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6급 중 좋은 눈시력 0.3이하
		·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· 공통 편의제공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6급
청각 장애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 수화통역사 배치 ·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·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-	기존 2~6급	
기타	특수 및 중복장애·일시적 신체장애	·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	검토 후 안내	-	
	임신부	· 높낮이 조절책상 · 시험 중 화장실 수시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	-	
	과민성 대장·방광증후군	· 시험중화장실 사용 · 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의사 진단서 (원본)	-	

\* 해당 항목 장애유형(기등급 등)의 조회·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진단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\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, A2 규격의 150%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

\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\* 축소문제지 : A4 규격의 82%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

※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**참고4****연장시간 시험시간표**

구 분	기본시간 응시자	시험시간 연장 응시자	
		1.5배 연장시간	1.7배 연장시간
응시자 교육 등	09:20 ~ 09:59		
시험시간 (4과목)	10:00 ~ 11:40 (100분)	10:00 ~ 12:30 (150분)	10:00 ~ 12:50 (170분)

※ **09:20까지 응시자 시험실 입실완료**(07:30 이후 정문 개방, 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
※ 외무영사직(3과목) 시험시간 연장 대상 응시자 없음